

【별 표】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제2조 관련)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징수기준
기술교육 수 강 료	1인1월	10,000원	· 1일 3시간 이내 · 주 5일 기준
생활문화 수 강 료	1인1월	10,000원	· 1일 2시간 이내 · 주 1일 기준
보 육 료	1인1월	7,500원	· 1일 3시간 이내 · 주 5일 기준
수 영 수 강 료	1인1월	40,000원	· 월 20시간 이내

※ 수강료 및 보육료는 강의·보육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킨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문화예술킨흥조례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해 오던 문화관광국 소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 위원회 통폐합정비계획에 의하여 주택국 소관 건축 조례를 개정('99. 7. 31)하여 건축위원회의 한 분과위원회로 통폐합되었으나, 관련조항의 위원회 명칭이 정비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비하고, 동 분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건축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운영중인 많은 위원회 중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시정개혁차원에서 폐지·통합하여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과 통합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종전의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위원회의 한 분과위원회

- 로 통폐합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이 종전과 다름이 없어 이는 위원회 통폐합이 형식적인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통합으로써 실질적인 통합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입법체계상의 혼란, 소관업무 부서간 갈등과 업무 비능률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 완전히 통합하여 주택국에서 관장하도록 하거나, 종전과 같이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를 문화관광국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하더라도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킨흥에관한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함.
- 현행 조례상 의회가 미술작품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시 5명을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23조와 같이 이를 삭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현행처럼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거나 소관 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위원회 통폐합의 타당성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조례 정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본 개정조례안은 '99. 12. 1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제출되어 '99. 12. 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사유
 -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업무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해 마련한 서울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p>3. 주요골자</p> <p>가. 청소년보호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청소년보호위원회」로 명칭변경(안 제1조)</p> <p>나.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보장함.(안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자문 ○ 청소년건전육성·보호 정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p>다.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함(안 제3조).</p> <p>(현행)</p> <p>(1) 구성 :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p> <p>(2)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위원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장 · 위촉직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p>(개정)</p> <p>(1) 구성 : 위원장 2인(행정1)부시장, 위원 중 호선)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p> <p>(2)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위원 :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 부부장검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방법부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문화관광국장 · 위촉직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관련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시민단체·교사단체·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 	<p>서 추천한 자,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p> <p>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8조).</p> <p>(1)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p> <p>(2) 위원장 및 위원 :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p> <p>(3) 기능 :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 전문적인 조사·연구, 검토의견서 제출과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p> <p>마.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p> <p>바. 위원회 안전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p> <p>4.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 명칭변경에 대해서(안 제1조) 청소년보호업무의 강화를 명분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변경할 경우 “보호” 업무만을 특정해서 치중하는 느낌이 있고, 본 조례의 목적 중의 하나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분야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 변경보다는 현행대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
--	--

됨.

- 위원수를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안 제3조)
현행 한정된 분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던 위원을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학부모,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보강하여 확대한 것은 청소년문제 해결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며,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안 제4조)
안 제4조제2항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1부시장의 임기 적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위촉위원 중에서도 호선된 위원장을 학부모 등 당해 직위가 없는 민간인이 맡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관련 조항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실무위원회 신설에 대해서(안 제8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은 청소년위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적인 업무수행에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 위촉에 있어 젊은층과 접촉이 많은 청소년관계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청소년회의 개최에 대해서(안 제10조)
청소년문제의 수요자인 청소년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칫 형식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회의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이 요망됨.

5. 참고사항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 ①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47조

-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 구역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내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교보사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문화예술진흥, 복지사회구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서울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직출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은 물론 문화예술진흥과 서울교육을 혁신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있음.

2. 감사기간

○ 1999. 11. 22 (월) ~ 12. 1 (수) [1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여성정책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보건복지국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문화관광국	시립보라매병원
국제협력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공사강남병원	

4. 감사위원 편성 : 16명

(다음 페이지에 계속)